

“국민”의 경계와 재외동포: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범수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본 논문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재중동포, 재사동포,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영토 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1960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로, 즉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한국전쟁(1950~1953)과 냉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1952), 일본의 재일동포 복송(1959)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정부수립 초기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인식에서 점차 이들을 “망각”하고 “타자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 설정이 정부수립 초기 혈통주의에 입각한 방식에서 점차 혈통뿐 아니라 국적, 거주지, 이념 등의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국민, 경계, 포섭, 배제, 재외동포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3357).

I. 서론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경계(boundary)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섭(inclusion)”하고 누구를 “배제(exclusion)”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대부분의 정치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서구 근대 국가들은 민족주의 이념에 기대어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imagine)”하는(Anderson, 1983) 사람들을 민족으로 재구성하여 정치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으로 포섭하는 한편 여타 사람들을 이방인(strangers)으로 타자(Others)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Habermas, 2000; 김범수, 2009: 177-8).

이처럼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민족을 국가 구성원인 국민으로 재편한 서구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일제 식민 지배와 분단으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상당 기간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또는 공유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민족의 경계와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경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약 900만 명 이상의 동포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고(통계청, 2015a) 중국, 일본, 소련 등지에도 약 200만 명 이상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동포의 상당수는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뒤이어 중국대륙에서 내전에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함에 따라, 그리고 한국 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우리나라와 소련의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에 소속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족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 사이의 불일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원택, 2006;

2011).

본 논문은 이러한 불일치를 염두에 두고 재중동포, 재소동포,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영토 밖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1960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정체성 측면에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로, 즉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국적법> 등의 규정에 상관없이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동아일보』 기사 검색 서비스(<http://newslibrary.naver.com>)와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조선일보』 기사 검색 서비스(<http://kiss.kstudy.com>)를 활용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 동포, 교포, 겨레, 민족, 국민, 재중, 재소, 재일, 한국(韓僑) 등의 키워드로 주요 기사를 검색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² 이러한

-
1.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이들 신문의 견해를 한국 사회 일반 의견으로 간주함으로써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뿐 아니라 여타 신문과 방송, 출판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분량 등의 제한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두 신문 기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이들 두 신문이 일제 시기 창간된 이래 한국 사회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앤더슨(Anderson, 1983: 32-46)이 민족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 기사가 직접적 상호작용과 대면접촉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은 제한적이거나 당시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주요 부분을 드러내줄 수 있으리라 본다.
 2. 이처럼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논문은 사회적 담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주지하듯이 재외동포에 관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법·제도에 초점을 맞춰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있다(김용찬, 2000; 이철우, 2002; 이진영, 2002; 김경득, 2003; 이종훈, 2003; 이병훈, 2004; 정인섭, 2004; 윤인진, 2005, 2013; 채경석, 2006; 최중호, 2006; 전재호, 2008).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사회적 담론에 초점을 맞춰 법 규정과 제도 변화에 상관없이 정체성 측면에서 재외동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한국전쟁(1950~1953)과 냉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1952), 일본의 재일동포 복송(1959) 등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정부 수립 초기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인식에서 점차 이들을 “망각”하고 “타자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혈통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 설정이 단순히 혈통뿐 아니라 국적, 거주지, 이념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혈통주의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비국민,” 또는 “진정한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작동해왔다(김동춘, 1999; 김현선, 2006; Shin, 2006).³ 이러한 이유로 신기욱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공통의 혈연과 조상을 강조하는 “종족형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로 규정하며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경계 설정이 혈통(bloodline)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인(Korean nation)을 구별하는데 있어 혈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주지나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들을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한) 형제 또는 자매”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북한 주

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최근의 몇몇 경험적 연구(강원택, 2006; 2011; 최현, 2007; 김도경 외, 2009; 윤인진·송영호, 2011; 김현숙 외, 2011; 김경은·윤노아, 2012; 박선웅, 2013)들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즉 “한국인”과 “비한국인”을 구별하는데 있어 혈통주의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례로 강원택(2006; 2011)의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혈연적 동질성” 보다 “국적과 같은 정치공동체의 공식적 소속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강원택, 2011: 17). 그러나 이처럼 혈통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선(2004), 정기선과 이선미(2011), 정기선 외 4인(2011) 등의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와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혈연과 같은 “종족적 요인”이 “국민”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평가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이나 재외동포의 경우도 “조상”이 같기 때문에 거주지, 출생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한민족”에 속하는 “한국인”으로 간주한다(Shin, 2006: 2-3). 이처럼 혈통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기욱의 연구는 한국 민족주의가 갖는 종족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인”의 경계 설정이 단순히 혈통뿐 아니라 국적, 거주지, 이념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재중동포, 재소동포, 재일동포 등 재외동포 사례를 통해 “한국인”의 경계 설정이, 즉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계 설정이 단순히 혈통뿐 아니라 혈통을 기본으로 국적, 거주지, 이념 등의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 고자 한다.

다음 절(II절)에서는 우선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국민”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특히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III절과 IV절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각각 재중동포와 재소동포(III절), 재일동포(IV절) 사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절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후 본 논문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부수립 전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19세기 중반 시작된 조선인의 해외 이주는 일제의 조선 병합 이후 본격화 되었다. 특히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으로 경작권을 상실한 농민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운 경작지와 일자리를 찾아 북부에서는 주로 만주, 연해주로 남부에서는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이 결과 만주 재류 조선인 숫자는 1910년 약 22만 명에서 1920년 약 46만 명, 1930년 약 60만 7천 명으로 증

가하였고 연해주 재류 조선인 숫자도 1910년 약 5만 5천 명에서 1925년 약 12만 명, 1937년 약 1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Yoon, 2012: 416, 419).⁴ 또한 일본 재류 조선인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11년 약 2,500명에서 1920년 약 3만 명, 1930년 약 30만 명, 1938년 약 8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外務省, 1961: 3). 한편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한 일제는 1932년 만주국을 세운 후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 결과 만주 재류 조선인 숫자는 1937년 백만 명을 넘어선 후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약 2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박경숙, 2009: 47). 일제는 또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노동력과 전투병 확보를 위해 1945년까지 약 백만에 달하는 조선인을 일본 본토는 물론 사할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 결과 1945년 해방 당시 일본 본토에만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재류하고 있었다(Kim, 2008: 876). 이외 약 백만 명 가량의 조선인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의 북경, 천진, 상해 등지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또는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⁵

1948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이후 이들 해외 재류 조선인 가운데 상당수는 고향을 찾아 조선으로 귀환하였다.⁶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들의 귀환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실례로 이들 기사에 의하면 해방 이후 조선으로 귀환한 동포의 수는 군정 외무처 발표를 기준으로 1945년 12월

-
4.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약 18만 명의 “조선인”은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모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현재 이들의 후손은 “고려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숫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1945년 해방 당시 임시정부 재정부장을 맡고 있던 조완구는 귀국 후 『동아일보』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재중동포의 실상을 전하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이 약 사백만”이며 그중 약 삼백만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 지역에 재류하고 있고 약 45만가량은 북경, 천진 지역에 재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동아일보, 1945/12/9). 이러한 언급을 근거로 본 논문은 해방 당시 약 백만 명 가량의 조선인이 동북삼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 재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6. 정확한 통계 자료의 부재로 해방 당시 해외 재류 조선인 숫자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통계들을 근거로 해방 당시 일본에 약 2백만, 만주에 약 2백만, 만주 이외 중국 지역에 약 백 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약 20만 등 대략 5백만 이상의 조선인들이 해외에 재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말 807,412명에 달하였으며(“작년 말까지 귀환동포 총계 80만 7천 4백,” 조선일보, 1946/1/6), 1946년 5월 15일 1,093,000명(“귀환동포 총수 1,093,000명,” 조선일보, 1946/5/21), 1947년 2월 7일 1,900,215명(“해방 이후 귀환동포 수 백구십만,” 조선일보, 1947/2/19)에 달하였다. 또한 전재동포원호회 중앙본부 조사를 인용한 1946년 12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해방 이후 귀환한 동포의 수가 일본에서 귀환한 1,288,405명, 중국과 만주에서 귀환한 881,410명, 남양(南洋) 방면에서 귀환한 30,927명, 북한에서 귀환한 482,736명을 포함하여 총 2,683,478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귀환동포 이백칠십만,” 동아일보, 1946/12/10). 한편 외무부가 집계한 해방 이후 인구동태 변화를 전하는 1949년 3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해방 이후 1949년 1월까지 외국 혹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환한 동포의 총 수는 2,190,677명에 이른다(“해외 귀환동포 등 이백만, 해방 이후의 인구 동태,” 조선일보, 1949/3/27).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해방 당시 해외 재류 조선인 숫자를 약 500만 명이라 가정할 때 이의 절반 정도인 약 250만 명 정도가 해방 이후 남한으로 귀환한 반면 나머지 약 250만 명 정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 재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해외 재류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로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 보자.

주지하듯이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이후 해방을 맞이한 조선은 새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을 만들어가는(nation-building)” 과정에서 “조선인”의 범주에 누구를 포섭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였다.⁷ 특히 1946~1947년을 거치며 남북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만의 총선거와 단독 정부수립이 불가피해지자 선거를 준비하는

7.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과 1948년 9월 9일 남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남과 북에서 미국과 소련 군정이 통치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한반도에 존재한 정치공동체의 명칭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반도 남북에 존재한 미군정과 소군정 하의 정치공동체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일제 병합 이전 명칭인 조선을 사용하고자 하며 또한 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정에서 누구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즉 남한에 새로 수립될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할 국민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미군정의 요청에 따라 1948년 3월 19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선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김수자, 2009: 122-128). 구체적으로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목적(제1조)으로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조선 국적 부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야 출생한 자.” 둘째,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야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셋째,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넷째,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 단, 혼인 해소에 의하여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다섯째,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단, 귀화의 요건 및 귀화인의 권한은 별도 법률로서 정함.” 또한 동 조례 제4조는 “외국에 귀화한 자”와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는 조선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즉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명시하여 일제 시기 일본 또는 중국 등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조선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a). 이러한 조항들은 국적 부여에 있어 부계우선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기본으로 무국적자 방지를 위해 출생지주의(jus soli)를 보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이후 국적법 제정에 있어서도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조선인을 부친 또는 모친으로 하여야 출생한 자 등이 조선 국적을 가진다는 사실은 명확히 하였으나, 즉 조선인의 후손이 조선 국적을 가진다는 사실은 명확히 하였으나 어떤 부친과 모친이 조선인인지, 즉 조선 국적 부여의 기준이 되는 조선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미군정 행정당국은 행정적으로 일제 시기 시행된 <조선호적령>에 의거 “조선 호적에 기재된 자”

를 조선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후손이 조선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았다.⁸

이후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7월 17일 헌법 제정공포, 8월 15일 정부수립 등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경계 설정 문제는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제3조에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동 헌법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국적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1948년 12월 20일 정식으로 <국적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b). 첫째,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둘째,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셋째,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
8. 일본은 조선을 공식 병합하기 이전인 1909년 3월 4일 통감부 법률 제8호로 제정한 <민적법(民籍法)>과 이후 이 법을 대체하기 위해 1923년 7월 1일 공포 시행한 <조선호적령>에 근거하여 조선인들을 “내지 일본인과 다른 일본인”으로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일본 본토와 조선, 대만에 각각 별도의 호적 제계를 유지한 채 아이누인과 유구인을 포함한 “내지 일본인”은 출생과 동시에 일본 호적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조선인과 대만인은 각각 조선 호적과 대만 호적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 호적, 조선 호적, 대만 호적 내에서의 전적(轉籍)은 자유로이 허용하였으나 일본 호적에서 조선 호적으로 또는 대만 호적으로, 그 반대로 조선 호적이나 대만 호적에서 일본 호적으로의 전적은 혼인·입양·인지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인이나 대만인은 일본으로 분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일본인도 조선이나 대만 내에서 분가나 일가 창립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적은 일본 호적 또는 조선 호적, 대만 호적 어느 한 곳에만 둘 수 있었으며, 신분 행위로 인하여 타 호적으로 본적을 옮기는 것은 곧 그의 법률상 신분이 조선인, 대만인 또는 일본인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경됨을 의미하였다. 즉 혈통 상 순수한 일본인이라도 조선 호적에 편입되면 법률상 조선인이 되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였다(정인섭, 1996: 12-3; 김범수, 2009: 184-6).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남한 지역에서 통치권을 관할한 미군정 행정당국 또한 기본적으로 일제시기부터 시행된 조선 호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한 채 이 제도에 근거하여 “조선 호적에 기재된 자”를 조선인으로 간주하였다.

자.” 넷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동법 제4조는 인지로 인한 국적 취득 요건을, 제5조, 제6조, 제7조는 귀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b). 이러한 규정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규정하는데 있어 부계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예외적으로 모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무국적자 방지를 위해 출생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1997년 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계 혈통주의를 부모양계(父母兩系) 혈통주의로 변경한 것과 2010년 10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큰 틀에 있어서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던 <국적법>의 흠결로 인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 기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권영설, 1997: 96-97; 이장희, 1998: 56-57). 특히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태어나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의 경우 다른 경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르면 이들 동포의 상당수는 비록 거주지는 남한이 아니지만 혈통 상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또는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조선 호적에 기재된 자”로서 조선 국적을 보유한 조선인이었다. 또한 건국 헌법 제100조가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동포들은 건국 헌법 공포와 더불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러나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조선 국적을 보유한 그리고 건국 헌법 제100조에 의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정부수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노영돈, 1997: 53-57).

이후 정부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등[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을 우리나라의 영사관에서 적극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 안은 필자 삽입)” 1949년 11월 24일 <재외국민등록법>을 제정·공포·시행하였다(조선일보 1949/10/13). 이 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제3조 제1호)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제5조), 그리고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제3조 제2호)는 “그 체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제5조) 본적, 주소, 거소 또는 체류 장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과 직업적 기능, 전거주의 장소, 병역관계, 호주의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체류의 목적 등(제4조)을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하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사관과 공사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이 법은 또한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제3조 제1호)로서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를 최촉(催促)할 수” 있으며 “전항의 최촉에도 불구하고 최촉 기간 내에 신고를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3조는 “대한민국주일대표단은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사관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재외국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c).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가운데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동포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가운데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었던 동포들, 특히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중국, 1945년 8월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 소련의 관할 하에 있던 사할린 등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부재한 국가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⁹ 동시에 이 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

포 가운데 재외국민등록을 거부하거나 또는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받을 보호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지지하는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거부한 “친공계(親共系)” 재일동포들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특히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법 규정과 제도에 상관없이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재중동포와 재소동포의 “망각”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 “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물론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또는 징용으로 해외로 끌려간 동포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신문 기사는 물론 대통령 담화, 정부 공식 행사 등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삼천만 동포”, “삼천만 민족”, “삼천만 겨레”, “삼천만 국민” 등 남과 북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인을 포괄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데서 잘 드러난다. 특히 1944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조선인 숫자가 25,120,174명에 불과(통계청 2015b)했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삼천만”이라는 표현이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뿐 아니라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약 5백만 명의 조선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¹⁰

-
9. 다만 동법 제12조는 “종전에 공관의 설치가 없던 지역에 새로이 공관이 설치된 때에는 제5조의 등록 기간은 그 설치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부재한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추후 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c).
 1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 1930~1948>에 의하면 1944년 말 기준 조선 인구는

실례로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전하는 1948년 10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신산(新産) 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이 마당에 본인이 존중한 대통령의 중책을 맡아 이제 국회의원 제위와 국내외의 삼천만 동포 앞에 시정의 대요를 피력함은 나의 가장 흔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라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전하며 “삼천만 동포”가 국내(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동아일보, 1948/10/1).¹¹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다난한 이해를 보내며”라는 제목의 1948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 사설도 “우리 삼천만 한족”을 언급하며 재외동포가 삼천만 가운데 일부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281년(필자: 서기 1948년을 지칭)의 첫날 우리 겨레가 공통적으로 가진 신년벽두의 최대 축원은 연내로 남북이 통일된 완전 자주독립정부의 수립이었다. 이 남북통일독립정부의 수립은 그 거주 재남재북재외를 막론하며 연령의 장유나 또는 성별의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삼천만 한족(韓族)의 일치 공통된 염원이었다(동아일보, 1948/12/31).

또한 1949년 7월 25일 열린 이승만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식 행사 소식

25,120,174명이었으나 해방 이후 분단으로 북한 인구가 통계에서 빠짐에 따라 1946년 말 기준 “남한” 인구는 19,369,2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5b).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추세 1910~1961>에 의하면 1949년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 남한 인구는 20,167,000명이며 국방부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된 북한 인구는 9,740,000명이다(통계청, 2015a). 이러한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 신문 기사나 대통령 담화, 정부 공식 행사 등에서 “우리 삼천만”, “삼천만 동포”, “삼천만 민족”, “삼천만 겨레”, “삼천만 국민” 등의 표현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은 정치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남한에 거주하는 이천만 명의 동포들뿐 아니라 북한과 해외에 거주하는 약 천만 이상의 동포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1. 이하에서 인용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꿔 인용하였다.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반면 철자법의 경우는 현재와 철자법이 다른 표현들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에 나온 철자대로 인용하였다. ○ 표시는 인쇄가 명확하지 않아 분별이 불가능한 글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용 내용 가운데 강조 표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가 강조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을 전하는 “빛나는 업적 찬양 대통령취임 기념식 거행 어제 중앙청서”라는 제목의 1949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도 정치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 인식이 북한 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취임 일년만에 쌓은 이승만 박사의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며 이대통령 영도아래 남북 삼천만 동포의 단결을 한층 굳게하기 위한 대통령 취임 일주년 기념식은 25일 오전 11시 중앙청 제일회의실에서 ... 개최되었는데 이날의 대통령의 훈시 부통령 및 이 국무총리의 하사(賀詞)는 다음과 같다. 오늘 대통령 취임 일주년 기념식을 하게 됨을 정부 당국 여러분과 동포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해내해외동포가 이를 기념하는 의미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동아일보, 1949/7/26).

이처럼 재외동포를 “우리”의 일원으로,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인식은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시간이 지나며 동포들의 귀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경계가 공고화됨에 따라 점차 이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재중동포와 재소동포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함에 따라 그리고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소련,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되었다.

우선 재중동포의 경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면에서 재중동포를 언급한 기사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동아일보』는 국공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해방의 기쁨도 일장몽 남북만(南北滿)에서 방황하는 백사십만 동포”(1946/9/7), “소식 모르는 백구십만 재만(在滿)동포”(1946/12/4), “팔십만 재만동포의 참상을 남경 정부에 호소”(1946/12/12), “만주 소식 동포 이십만 체류 식량난에 허덕이는 중국인들”(1948/12/24) 등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 중국, 특히 만주에 재류하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이후 공산당의 승

리가 임박해지자 “재만동포 귀환 완료”(1948/9/11), “재호(在滬; 필자: 재상하이)동포는 안전”(1949/5/7), “상해는 수라장화(修羅場化)”(1949/5/12), “상해 재류 동포 육백 명 구호선 십칠일 출범”(1949/5/13), “재상해 육백 동포 운명 위급 서북(西北)회사 항공기 이용”(1949/5/18) 등의 기사를 통해 중국에서 귀환한 또는 귀환하고자 하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¹²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재중동포에 관한 기사는 “중공지구(中共地區)에 거주하고 있던 교포 십칠 명이 불원 귀국”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중공지구 거주 교포 십칠 명 불원(不遠) 귀국”이라는 제목의 1954년 7월 18일자 기사와 “중공 탈출에 성공”한 후 홍콩을 거쳐 “고국의 품안으로 돌아온 모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는 “중공 탈출 이만리”라는 제목의 1959년 11월 22일자 기사를 제외하고는 『동아일보』 지면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일보』의 경우도 국공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는 “귀환선은 마지막! 재중동포 아직도 백여만 전후(戰後) 팔회에 팔천 명 귀국”(1948/9/11), “중 당국 재류동포 우대”(1949/1/30), “상해 재류 동포의 구출책을 강구 중”(1949/4/28), “상해동포 구제코자 선박을 17일 급파”(1949/5/14), “중국 피난 동포 사십 명 인천에 입항”(1949/8/12) 등의 기사를 통해 재중동포들의 귀환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상해 근처에 거주하던 동포 가운데 약 300명의 동포가 “중공 정권에 협력하지 않아” 추방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추방될 때를 대비하여 입국시키기로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중공서 추방되는 동포 국무회의서 입국시키기로 의결”이라는 제목의 1954년 4월 11일자 기사와 “중공 지역에 있는 한국 거류민 중 십칠 명이 귀국을 신청하여”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하는 “중공 지역의 교포들 입국을 허가”라는 제목의

12. 특히 위 기사 가운데 “재만동포 귀환 완료”라는 제목의 1948년 9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재만동포 마즈막 귀환선은 7일 아츨 재만 잔류동포 1129명을 실코 외무처 중국과장 김한기 씨의 인솔로 무사히 귀환하였는데 이것으로 재만동포의 귀환선은 마즈막이라하며 전후 8회에 걸쳐 고국에 도라온 동포의 수는 8588명이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재만동포 귀환 완료”라는 제목을 통해 만주에 더 이상 동포가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1954년 7월 18일자 기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재중동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 정부 또는 민간에서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상황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망각”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조선인들과 일제 때 징용 등으로 만주, 사할린으로 끌려간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련에 계속 남아 있어야 했던 조선인 등 재소동포의 경우도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소련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됨에 따라 『동아일보』 기사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의 머리에서 거의 완전히(?) 버림받은 「잊어버린 동포,」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우리의 동포, “망각지대(忘却地帶)의 동포들”이 되었다(동아일보, 1955/12/29).¹³ 실제로 『동아일보』 지면에서 재소동포를 언급한 기사는 소련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었다 귀환한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는 1949년도 기사 4~5건과 1957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송환과 관련한 기사를 제외하면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까지 약 12년 동안 십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⁴ 특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조선인 동포에 관한 기사는 1947년 1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소련파견교원시찰단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한 박원민씨가 자신의 소련 방문 경험을 연재하며 도중에 만난 몇몇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표 1〉 참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련 포로수용소에서 귀환한 동포들의 소식을 전하는 1949년도 기사 5건과 1957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할린 거주 동포들

13. “망각지대의 동포들 적국(소련) 수용소서 억류생활”이라는 제목의 1955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당시 소련 포로수용소에 억류되어 생활하고 있던 세 명의 동포가 보낸 “부로우편(俘虜郵便)” 내용을 전하며 이들 수용소에 억류된 동포들을 “우리의 머리에서 거의 완전히(?) 버림받은 「잊어버린 동포,」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우리의 동포, “망각지대의 동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4.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소련은 1957년부터 사할린에 남아있던 “조선인” 가운데 일본인과 결혼한 자들에 한해 일본으로의 귀환을 허용하였고 이에 약 천여 명의 동포들이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귀환 이후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정착하였으나 일부는 일본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57년 8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 이들의 귀환 소식을 전하고 있다.

〈표 1〉 소련(사할린 포함) 재류 또는 소련 귀환 동포를 언급한 『동아일보』 기사 목록⁽¹⁾

일자	기사 제목	비고
1948/10/28	소련 기행(1)	
1948/11/2	소련 기행(4)	
1948/11/5	소련 기행(7)	
1948/11/28	국회 모욕에 물의 대일 징용임금 요구 청원 채택 ⁽²⁾	
1949/2/6	4만 동포가 신음 화태(樵太) ⁽³⁾ 서 탈주한 청년 보고	수기
1949/4/20	지옥 같은 포로 생활 통한의 사년 생활은 몽외(夢外)	
1949/5/19	화태 천도(千島) ⁽⁴⁾ 동포 구출책 묘연 정부서 대책 강구	
1949/8/24	영양 부족으로 연일 사망 목재채벌 철도공사 등에 사역	
1949/12/19	소련에 억류된 동포 생존자 씨명 12월 체신부 조사	
1955/10/30	재소 포로의 비운 구출 방법 없나?	
1955/12/29	망각지대의 동포들 적국 (소련) 수용소서 억류 생활	
1957/8/9	일본에 송환된 교포 화태에 남은 동포의 실정(實情) 폭로	
1957/8/9	대부분이 일본 거주 희망	
1957/8/11	화태 송환 교포 신원 등 판명	사실
1957/8/11	외교 실무 방침의 재검토	
1957/9/23	거의 교포들 화태 송환자	
1957/12/26	귀국 꺼리고 꺼려하고 화태서 송환된 교포 운명	
1958/2/4	대부분 일제 때의 피징용자 화태서 3차로 438명	명단
1958/2/16	네 번째로 86세대 456명 귀환	
1958/10/2	화태지구 교포 443명 귀환	
1958/10/3	화태지구 귀환 교포 명단(2)	명단
1958/10/4	화태지구 귀환 교포 명단(3)	명단
1958/10/5	화태지구 귀환 교포 명단(4)	명단
1958/10/6	화태지구 귀환 교포 명단(완)	명단
1959/2/6	붉은 채찍에 신음하는 5만 교포 화태서 돌아온 염홍식씨가 폭로	
1959/2/6	대부분이 교포 172명 송환	
1959/2/22	31가구 147명 소련서 돌아온 교포	
1959/2/26	교포 일가족 화태서 귀국	
1959/3/14	화태서 또 일가 6명 귀국 2차 대전 때 강제로 징용 간 교포	
1959/5/30	화태 억류 교포 조사	
1959/9/28	오무라(大村) 입국자 수용소 현지 루포(4)	
1960/4/1	십 명 귀국 예정 화태서 돌아온 교포	
1960/4/2	1일 아침 부산에 화태서 강제노역된 교포 10명	
1960/4/3	처음 보는 조국	

(1)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동아일보』 검색에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재소 동포”, “소련 동포”, “소련 교포”, “화태 동포”, “화태, 교포”로 검색한 기사 가운데 소련(사할린 포함) 재류 동포 또는 소련에서 귀환한 동포를 직접 언급한 기사 목록(2015년 3월 15일 검색).

(2) 〈화태천도재류동포환국운동에 관한 청원안〉 국회 의결 소식을 전함.

(3) 화태(樵太)는 사할린 섬의 일본식 명칭인 가라후토(樵太)를 한국식으로 음차한 표현임.

(4) 천도(千島)는 쿠릴열도의 일본식 명칭인 치시마(千島)를 한국식으로 음차한 표현임.

〈표 2〉 소련(사할린 포함) 재류 또는 소련 귀환 동포를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 목록⁽¹⁾

일자	기사 제목	비고
1949/2/6	화태동포 근황 탈주 귀국한 청년 보고	
1949/6/13	화태·천도의 5만 동포 구출방도는 없는가?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망	
1949/11/12	민국에 충성을 맹서 소련 갔던 귀환동포 환영회	
1949/11/16	소련 옷 걸쳤을망정 씩씩한 대한의 아들 귀환동포 시위행진	
1949/12/19	소련에 포로된 3백 동포 체신부에서 성명 발표	
1953/12/24	소련서 꿈같은 생활 5명의 동포 일본 「무학(舞鶴)」에	
1957/3/18	동포 146명도 포함 소(蘇), 무국적자 송환조치	
1957/4/21	한국인 146명 포함 소(蘇) 일인(日人) 등 억류인 송환을 발표	
1957/7/30	한인 137명 포함 소련 억류 일본인 일본함으로 귀환	
1957/8/1	귀환 교포에도 수당지급 요구 주일대표부에 훈령	
1957/8/2	대부분 탄광 노동자 한인 137명 소련서 일본 귀착	
1957/8/4	소련령 송환 한국인에 거주지는 각자 선택 일본정부 당국자 밝혀	
1957/8/5	화태 억류 동포의 일본 송환의 보(報)를 듣고	
1957/8/9	소련 송환 교포 159명 31명은 징용자	사실
1957/8/10	화태서 송환된 교포들의 명단	
1957/10/22	화태서 교포 간 충돌 일본과 북한에의 송환문제 위요(圍繞)	명단
1957/11/8	일본에 송환된 교포 명단	
1957/11/22	가라후도에서 송환된 교포와 연락 대한적십자사서 주선	명단
1957/12/22	소련 일본에 또 송환 통고 화태거주 한국인 등 천여 명	
1958/1/28	화태 교포의 구출책을 강구하자	
1958/2/4	화태서 귀환된 교포들 3차로 438명	사실
1958/2/16	화태서 일본에 송환된 교포 4차 귀환자 명단	
1958/10/2	화태 교포 86세대를 송환 총 4백43명 일본 무학에	명단
1958/10/2	일본에 송환된 화태 교포 86세대	
1959/2/6	소련서 억류자 또 송환 교포 등 172명 포함	
1959/3/4	31가구 148명 화태 교포 또 일본에 송환 외무부 발표 소련서 6차로	
1959/7/7	화태 거류 교포 신고 8월 15일까지 연기	
1959/9/12	화태 한인 60명 송환 소련서 일본에 통고	
1960/4/1	화태에 아직 교포 4만 조국 귀환 모두 갈망	
1960/9/9	“5만 교포 구해주오” 가라후도서 귀국한 장정석씨 공항서 호소	

(1) 한국학술정보 『조선일보』 검색에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재소 동포”, “소련 동포”, “소련 교포”, “화태 동포”, “화태, 교포”로 검색한 기사 가운데 소련(사할린 포함) 재류 동포 또는 소련에서 귀환한 동포를 직접 언급한 기사 목록 (2015년 3월 15일 검색).

의 송환과 관련한 기사를 제외하고 재소동포 또는 재사할린동포를 언급한 기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까지 약 12년 동안 사실상 십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표 2〉 참고).

당시 재소동포, 특히 재사할린동포에 대한 정부의 “무신경”과 “수수방관”

자세를 비판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설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이들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잘 드러내준다. 실례로 “외교 실무 방침의 재검토”라는 제목의 1957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재소동포, 특히 재사할린동포에 대한 정부의 “무신경”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가 정책면에 있어서 무위무책(無爲無策)하고 실무면에 있어서 졸렬(拙劣)·부패하여 마치 ‘외교 없는 나라’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작금에 시작된 일이 아니요,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키는 커녕 오히려 침체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국제적 활동인 활발해 지기는커녕 오히려 위축하는 경향이 있다 함은 가슴 아프지만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그러한 폐단을 요약 비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미약한 우리 외교를 다소라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므로 자(茲)에 솔직한 충언을 개진키로 한다. 그 첫째는 정보 수수(收蒐) 활동의 무위태만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우리 외무당국은 ... 이차대전 후 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만을 헤아리는 교포가 화태(樞太)에서 소련 정부에게 불법 억류되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거기서 일본에 송환된 어떤 동포의 입을 빌려서야 겨우 알았다는 정도로 무신경하다(동아일보, 1957/8/11).

비슷한 맥락에서 “화태 억류 동포의 일본 송환의 보(報)를 듣고”라는 제목의 1957년 8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차대전 종전 시에 만주 중국 등지에서 종적을 감춘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일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소련에 억류된 일본인 송환의 일부로 화태(樞太)에서 일본여자와 결혼한 한국인과 그 가족 134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한다. 그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지금 화태에 약 4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여 그 중 9할가량이 본국 귀환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 그들의 조기 송환을 기한다 해도 제반 사정이 심히 어려운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하겠으나 그렇다하여 이러한 보도에 접하여 우리 정부로서 다만 수수방관해도 좋다 할 수는 없다. 이 화태뿐 아니라 한인으로서 이차대전 종전 시에 만주 중국

등지에서 종적을 감추고 북한에서 반공적이라 하여 잡혀가고 6·25 전란 중에 남한에서 납치되고 한 수(數)조차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거처와 생사조차 알 길이 없게 되어있다. 이 가운데 전란 중 납치된 자에 대해서만은 명단을 작성하고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다 하나 그 뒤 아무런 진전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행방불명자는 정부로서 조사의 의도조차 보인 일이 없는 것이다. … 화태에 강제겨주를 하고 있는 교포의 소식을 듣고 더욱 외국 각지에 산재해있을 불운한 동포들을 구출할 방도를 강구해주도록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다(조선일보, 1957/8/5).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재외동포 통계를 전하는 1955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당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범주에서 의도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 부재로 인해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등록한 건 28% 55만의 재일교포”, “해외교포 수 55만 9천여 명”이라는 제목으로 1955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 3면에 나란히 실린 두 기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외무부에서는 28일 방교국(邦交局)에서 발행하는 주간정보(週刊情報)지를 통하여 1954년 9월말 현재까지의 재일교포는 총 수 55만6천7백5명이며 그 중 1954년 말 현재 우리 주일대표부에 등록된 교포 수가 총수의 28.7퍼센트인 15만9천9백51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외무부 당국자는 불과 3할 미만의 교포만이 주일대표부에 등록된 데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등록을 회피한자 중 대다수가 북한 괴뢰 집단의 사수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조선일보, 1955/7/29).

17개 외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포 총수는 55만 9천 6백 69명인데 각국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2,244명 ▲멕시코-8명 ▲독일-21명 ▲항항(香港; 필자: 홍콩)-126명 ▲호주-7명 ▲영국-27명 ▲불란서-83명 ▲이태리- 16명 ▲서반아-3명 ▲백이기(白耳其; 필자: 벨기에)-12명 ▲○西-3명 ▲정말(丁抹; 필자: 덴마크)-3명 ▲화란(和蘭; 필자: 네덜란드)-1명 ▲낙위(諾威; 필자: 노르웨이) ▲비율빈(比律賓; 필자: 필리핀)-38명 ▲대만-37명 ▲일본-

556,705명(조선일보, 1955/7/29).

위 기사 내용은 당시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는 약 55만 명의 동포는 재외 국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교포”의 범주에, 즉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의 범주에 포함한 반면(위 기사에 의하면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재일동포 수는 159,951명에 불과하다) 중국 본토와 사할린,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교포”의 범주에서 의도적은 아니라 할 지라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이 기사 어디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만주를 포함한 중국 본토에 계속 남아있던 약 백여만 명의 조선인들과 일제의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소련에 점령된 사할린에 계속 남아 있던 수만 명의 조선인, 그리고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수십만 명의 조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소련의 사할린 점령(1945)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사할린 소련 귀속(195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한국전쟁과 뒤이은 냉전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재중동포와 재소동포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 동포는 정부 통계에서도 완전히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되었다.

IV. “조련계” 재일동포의 타자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한국전쟁, 냉전을 거치며 재중동포와 재소동포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된 반면 재일동포의 경우는 위의 『조선일보』 기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재외국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와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등의 조직을 통해 해방 이후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약 60만에 달하는 재일동포의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1951년 10월 20일 동경에서 열린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1965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계속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확히 하였다.¹⁵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재일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인식은 당시 한일협상 관련 소식을 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재일동포에 한국 국적을”이라는 제목의 1951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정부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협상을 앞두고 [1951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일동포에게 한국 국적을 주며 그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여 줄 것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조선일보, 1951/10/12). 이후 『조선일보』는 “한일회담 난항 우리 동포를 어찌하지는 걸까? 한인의 법적지위에 쌍방 의견 차이”(1951/11/11), “한일협상 일본대표 대폭 양보 교포 특수외국인 대우도 시인”(1951/12/3), “원칙엔 대체합의 한일협상 교포의 법적지위”(1951/12/24), “일부 특권을 인정 교포 대우 한일협상 연말연시는 휴회”(1951/12/29), “영주권 획득 등 교포 국적 사실상 체결”(1952/4/4), “교포 영주권 획득 불원(不遠)한일협약을 체결”(1952/4/18) 등 일련의 한일협상 관련 기사에서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민” 즉 “한국인”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⁶

-
15.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봉섭(2009: 8-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정부는 재일동포를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이들의 귀국을 어렵게 하거나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경원시하였으며 재일동포의 생계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다.
16.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초기 입장은 이들을 일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으로 치우하는 것이었다. 실례로 재일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1949년 1월 26일 민사갑(民事甲) 144호 민사국장 회답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의연 일본 국적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950년 4월 새로운 일본 국적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국적문제도 중 국적으로 강화조약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그 때까지는 일본 국적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재일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정인섭, 1996: 33-34). 오누마(大沼)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재일조선인을 계속 “일본인”으로 치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들을 “외국인”으로 치우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권과 경찰권 행사가 어려워져 치안 유지에 곤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大沼, 1978a: 117). 그러나 이처럼 치안 유지에 도움

『동아일보』의 경우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국적분위(國籍分委) 재개도 결정 일(日), 대폭 양보 시사”(1951/11/30), “재일교포에 특권 부여 한 일회담 내(來) 구일까지 휴회”(1951/12/24), “한국 국적 인정 한일회담 기본 원칙 협정”(1952/1/26), “한일 본회담 수(遂) 개막 국적 선박 문제 토의”(1952/2/16), “한일회담 결정 단계 성패여부는 금후 일주 내”(1952/4/2), “한일회담 15일 재개 김(金) 공사 일(日) 외무성 간 합의”(1953/4/8), “한일회담 작일(昨日) 재개 중요 의제는 일(日) 선거 후 토의”(1953/4/16), “화부(華府)에서 한일회담을 재개? 일 정부 억류 한인 석방 결정”(1955/12/11) 등 일련의 한일협상 관련 기사에서 재일동포를 “한국인”, “재일한국인”, “한인”, “한교” 등으로 칭하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사 가운데 “한국 국적 인정 한일회담 기본원칙 협정”이라는 제목의 1952년 1월 26일자 기사는 당시 한일 양국이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대한민국 시민”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재일한교 문제에 관한 협정이 내주 성립될 것인데 이 협정은 한교의 지위 및 대우 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협정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동 문제를 토의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24일 아침 동 협정 내에 기록된 내용[목차]

이 된다는 이유로 재일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치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참정권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일본 정부는 이들을 사실상 “외국인”으로 치우하며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47년 5월 2일 공포한 “외국인등록령” 제 11조에서 “조선인은 본 칙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을 “외국인”으로 치우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大沼, 1978b: 140). 이후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연합국 측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며 1952년 4월 28일 이 조약의 발효와 함께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계속된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후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조선인”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의 국적문제를 해결할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이 계속 결렬됨에 따라 일본 내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무국적자(無國籍者)”가 되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최종 타결된 이후부터이다(김범수, 2009: 187-189).

과 사용될 어구를 연구하기 위하여 회합하였는데 일본 패전 이후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되는 최초의 역사적 협정인 동 협정에 대하여 양측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넣기로 원칙상 합의를 보았다.

일.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지위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이. 일본 패전 이전부터 일본 내에 거주한 한국인의 일본 내 영구거주권

삼. 일본 당국의 한국인에 대한 대우

사. 재산의 송환 (중략) (동아일보, 1952/1/26)

“한일 본회담 수(遂) 개막 국적 선박 문제 토의”라는 제목의 1952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도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5일부터 드디어 한일회담이 재개되는데 동 회담은 3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일 간에 문제로 되어있는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 문제인데 현재 일본 거류 한국인은 54만 명이다. 이 사람들은 평화조약 효력 발생과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이탈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동아일보, 1952/2/16).

또한 “한일회담의 경위와 전망(하)”이라는 제목의 1958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한일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와 일본의 주장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칭(公稱) 60만 명에 달한다는 재일한교 법적지위 문제는 이들의 국적문제와 처우문제가 회담 진행에의 논점이 될 것은 확실한 것이다. 한국 측은 60만 교포의 국적을 전부 대한민국으로 하여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과 종전 전 일본에 거주한 교포에 대하여서는 일본 정부가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할 것이나 조세 면에 있어서는 한국 교포의 경제적인 실태가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면 곤란하므로 일본 내국민 대우를 하라고 제의할 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국적문제에 있어서도 (1) 한국이 남북으로 이분되고 있는 현재 재일한국인의 국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2) 재일한국인에게 일본영주권을 부여할 것인가 (3) 국적 선택의 자유를 줄 것인가 (4) 한국인의 일본 귀화 수속의 간소화 문제 (5) 재일한국인에게 생활보호(현재 약간의 원호정책이 실시되고 있음)를 줄 것인가 하는 등 문제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측은 자국민의 소위 혈세정책에 의하여 징수된 예산을 외국인인 한국인에 「생활보호정책」을 쓴다는데 대하여서는 국민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동아일보, 1952/2/16).

이외에 “재일교포 일부 강제송환 주일대표부 일본정부에 항의”(1952/5/15), “교포를 불법탄압 김(金) 주일공사 일 정부 태도 비난”(1952/7/14), “재일교포 문제 일(日) 당국자, 기자에 언급”(1952/8/14), “한교 추방을 극력 추진 일(日), 「히코시마(彦島)」에 대수용소를 건설”(1952/10/4), “한인에 최루탄 일(日), 수용소서 사용”(1952/11/16), “일(日), 조직적으로 교포 박해 회담재개 표방과는 반대 방향”(1953/12/3), “반성 없는 일본 정부 감금 교포 석방 요구에 변명뿐”(1954/7/20), “일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 오무라(大村) 수용소 내 동포의 억울한 참상”(1954/8/1), “일천사백삼십오명 일(日), 억류 한인 수를 정식 발표”(1956/4/5) 등 재일동포 관련 소식을 전하는 다수의 『조선일보』 기사들도 “한국인”, “재일한국인”, “한인”, “한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의 1955년 10월 23일자 『조선일보』 “일사일언(一事一言)” 가십 난에 실린 칼럼은 제36회 전국체전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한 재일동포 선수단 일행을 “한 할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그들”이라 칭하며 이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칼럼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재일교포 대표선수단 일행 25명이 21일 하오 ○○○○로 입경(入京)하여 좀 늦게나마 전국체전경기에 참가케 되었다. … 먼 ○○에 가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조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야 어찌 다를 바 있을 것인가? … 피는 물보다 겹다고 한바와 같이 다 같이 한 할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그들이 원방(遠方)에서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반가웁고 기쁜 일이나(조선일보,

1955/10/23).

이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들은 당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재일동포, 특히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 재일동포 2세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 시기 우리 사회 곳곳에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이 죄과는 누가 저야 하나? 모국어 모르는 재일교포 학생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1956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2면에 실린 어느 학생의 글은 당시 “조국”을 방문한 재일교포 학생 야구단 일행이 모국어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금반 우리 재일교포 학생 야구단 일행이 꿈속에만 그리고 있던 조국의 강토에 발을 처음 디디게 된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국내 학생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런데 야구선수 전부가 우리 동포이면서도 모국어를 말할 수 없었다는 모(某)일보의 기사를 보고 나는 한번 크게 놀랐다. 물론 교포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어서 교포들만이 수학하는 단국학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인들의 틈에 끼어 배우는 처지이므로 자연 모국어를 일상생활어로 쓰는 기회가 적을 것이고 그들의 차별대우를 면하자면 자연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자위도 해 보았으나 그래도 웬일인지 참을 수 없다. 일제 시에도 일본에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이 모국어에는 전혀 병어리면서 일어만은 유창하게 하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알고 만족해하던 것을 볼 때 펍으나 밍쌀스럽게 보였던 심사인 까닭인지는 몰라도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모국어를 백지라는 것은 경악하여 마지않을 일이다. 생후 처음 만나는 외조모나 친척들이 환영 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다만 당사자의 고충으로만 생각하여야 할 것일까. 우리나라에 대대로 거주하는 중국인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제까지 중국 아이들과 말을 해본 예가 없다. 교포 학생들이 우리 모국어를 모르는 것은 학생의 죄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국인 대한민국이 있고 그들의 부모가 있을 것이니 그 죄과는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가 저야 할 것이요 그들을 교육시키는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찌하면 이 기괴한 현상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모국 일 학생) (동아일보, 1956/8/

17)

비슷한 맥락에서 1957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 3면 “색연필” 난에 실린 글도 당시 방학을 맞아 “조국”을 방문한 재일교포 2세들의 태반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생전 처음으로 조국의 땅을 밟아본 재일교포들의 2세인 조국 방문단원들의 태반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거나 듣지를 못하였고 자기들끼리도 일본말로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천리 땅에 떨어져 있어도 나라의 이끼를 잊지 말라」는 요지의 오(吳) 공보실장의 말을 듣고 울기도 한 어린 학생들이었으나 「중국인은 타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말을 잊지 않는다」는 말에 비하면 섭섭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그리고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부터 좀 반성해야 할 일(조선일보, 1957/8/30).

이러한 실망감과 더불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재일동포의 “좌경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련의 재일동포 관련 기사와 사설을 통해 “좌경화”된 “공산계” 재일동포를 “북한 동정자(同情者)”, “북한계 교포”, “재일 북한계”, “조련계(朝聯系)”, “재일 조련계”, “친공계”, “친공계 교포”, “재일좌계(左系) 교포”, “적색(赤色) 분자”, “적색 교포”, “적색 한교”, “재일 적도(赤徒)”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선도”와 “지도” 대책을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¹⁷ 실례로

17. 재일동포에 대해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의 예로는 “재일좌계 교포 6·25에 폭동”(조선일보, 1952/6/27), “적색 한교 구축 재일동포 이 대통령에 결의문”(조선일보, 1953/3/20), “적색분자의 북한 향(向) 허가 일(日)에 엄중항의”(동아일보, 1955/8/29), “중앙위 2명 숙청 재일 조련계서”(동아일보, 1956/2/27), “재일 적도(赤徒)들 압투 「조련」 두목급들에 숙청의 선풍(旋風)”(조선일보, 1956/2/27), “공산계 재일한인 북한 송환을 요구”(조선일보, 1956/4/8), “적색 교포 농성 북한 송환을 요구”(조선일보, 1956/4/18), “재일 북한계에 괴뢰 방송 지령”(동아일보, 1956/5/26), “자비귀국 허가 북한계 교포에 일 정부서 결정”(동아일보, 1956/6/20), “북한계열 석방 유(柳) 공사, 석명 요구”(동아일보, 1958/7/8), “언급을 회피 조(曹) 장관, 일(日)의 친공계 석방에”(동아일보, 1958/7/11) 등이 있다.

“한심한 재일동포 60만 명의 7할이 북한동정자 일본서 추방 명령에”라는 제목의 1952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한일 양국 간에 “일본에 거류하고 있는 약 60만 명의 한국인 처리에 대하여 대체로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들 60만 명의 재일동포 가운데 “7할이 북한동정자”라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조선일보, 1952/3/6). 비슷한 맥락에서 “혼을 적마에 판 거류민들 한일회담 방해 시위는 통탄”이라는 제목의 1952년 4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공산주의자의 수족”이 된 재일동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약 8개월간에 걸쳐 한일회담에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재작 26일 귀국한 교통부 해운국 황부길 씨는 재일동포들의 동태에 관하여 재일한인들은 그 팔, 구 할이 구조선인연맹계통의 공산주의자의 수족이 되어 갖은 파괴행동을 자행함으로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인들로부터 극도의 악감을 사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한일회담에 대해서도 갖은 방해 공작을 감행하였는데 일례를 보면 병 속에 인분을 넣어서 (그들은 이것을 황금병이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 고관 저택에 던지고 또는 떼를 지어 한국 측 대표들은 빨리 돌아가라는 등의 ‘데모’를 감행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상태는 대부분이 밀주 밀도살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세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본 국내의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또한 한인 전체에 대한 일인들의 멸시감을 자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일한인들이 하루 속히 그 추잡한 행동을 청산하고 일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도한 문제가 매우 긴급하다고 강조하였다(동아일보, 1952/4/28).

또한 “재일교포 사상 선도에 노력하라”는 제목의 195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약 80만 내지 100만 명에 달하는 재일교포는 그 중 8할이 좌경하였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사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귀국한 재일 거류민단 간부 일행의 보고에 의하면 약 80만 내지 100만 명에 달하는 재일교포는 그 중 8할이 좌경화하였다 하며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교포의 9할이 실직에 의하여 생활 방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고 한다. 만일 이나마도 거류민단에서 지도하지 않았던들 교포 전부가 공산사상에 휩쓸렸을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가 있기를 요청하였다. 생각하면 재일교포의 동향이 8·15 해방 이래 대강 어그러졌고 현재도 어떠한 실정에 있다는 것은 혹은 여행자의 관찰담이나 혹은 보도 등에 의하여 짐작되지 못한 바도 아니나 우리가 직접 재일 거류민단 간부의 보고를 듣고 보니 새삼스럽게 재일교포에 대한 지도 대책의 시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조선일보, 1952/9/22).

“재일교포 지도대책을 세우라”는 제목의 1956년 9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도 “교포 학생들이 생활고와 좌익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배반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재일동포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56만에 달하는 재일교포의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적지않이 논의되어온 바이지만은 최근의 보도를 보더라도 교포 학생들이 생활고와 좌익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국을 배반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 … 56만이라는 막대한 수의 재일교포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좌시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키 곤란한 실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도대체 교포의 보호 감독을 임무로 하여야 할 주일대표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북한 괴뢰는 일본을 무대로 하여 갖은 흉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대표부가 간혹 관료적인 악폐(惡弊)를 교포에게 끼친다는 말은 있으나 교포 보호에는 이처럼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56만 교포를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외무부 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조선일보, 1956/9/8).

재일동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을 요구하는 기사와 사설은 특히 1959년 1월 30일 일본 외상(外相)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일동포의 북한 송환을 곧 허가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¹⁸ 실례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18. 당시 후지야마(藤山) 외상의 성명 발표 소식을 전하는 “북한 송환 곧 허가 후지야마

〈표 3〉 “재일교포”를 언급한 『동아일보』 기사 수⁽¹⁾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기사 수	0	18	17	10	12	11	18
사설 수	0	1	0	1	0	0	1
연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기사 수	31	43	65	97	1,086	368	
사설 수	4	2	1	1	31	12	

(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상세검색에서 <유형>을 기사로 한정하여 검색(2105년 3월 7일 검색).

〈표 4〉 “재일교포”를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 수⁽¹⁾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기사 수	0	0	2	0	32	17	39
연도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기사 수	27	80	105	74	1,354	357	

(1) 한국학술정보 제공 『조선일보』 검색에서 검색어를 “재일교포”로 하여 제목, 본문, 주제로 검색(2015년 3월 12일 검색).

서 당시 재일동포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였던 “재일교포”로 『동아일보』 기사를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재일교포를 언급한 기사의 수가 195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59년의 경우 무려 1,086건에 달하고 있으며 재일교포를 언급한 사설의 수도 1949년 1건, 1951년 1건, 1954년 1건, 1955년 4건, 1956년 2건, 1957년 1건, 1958년 1건 등 1955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것이 1959년의 경우 한 해 동안 무려 31건의 사설이 재일교포를 언급하고 있다(〈표 3〉 참조).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일본 외상이 성명이라는 제목의 1959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藤山 일본 수상(외상의 오타로 보임; 필자)은 30일 재일한국인으로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불원(不遠) 그렇게 하도록 허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藤山씨는 이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입각한 인도적 이유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외상(同外相)의 성명은 일본적십자사에서 「동문제(同問題)는 한일관계의 정치적 국면을 떠난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10일 후에 발표된 것이다.”

경우도 재일교포를 언급한 기사의 수가 1959년 무려 1,354건에 달하고 있으며(〈표 4〉 참조) 1959년 한 해 동안 약 20건의 사설에서 재일동포 복송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사설들은 재일동포와 이들의 복송을 바라보는 당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교포 송복 좌시할 수 없다 이대통령, 한일회담에도 영향 경고”라는 제목의 1959년 2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재일동포 복송 방침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9일 한국인 재일교포들을 집단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려는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방관만 하지는 않으리라”고 언명하였다. 교포 복송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최근의 조치에 관하여 묻는 AFP의 서면질문에 답하여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한국은 그의 국민이며 그의 주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이들 교포들을 북한으로 송치하려는 일본의 처사에 대하여 자유세계의 우방들과 인방(隣邦)들이 이를 용인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일본이 이들 한국인들로부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사취하는 것이 묵인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그와 같은 자유우방 또는 인방들로부터 지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동아일보, 1959/2/10).

또한 “교포 송복에 대한 국민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1959년 2월 14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까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첫째로 그들이 한국인이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한국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둘째로 1958년 12월말일 柳藤山 간에 합의를 본 비밀각서는 교포 송환 문제를 한일회담에서 결정기로 명시하였으며 셋째로 이 합의가 한일회담을 성립케 한 근본요소이며 또 그 한일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돌연 배신하여 한국 및 한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한일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을 가지고 한국과 한국민

을 우롱하는 미끼로 삼았다는 평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동아일보, 1959/2/14).

이와 더불어 북송 반대 국민운동과 관련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재일동포의 북송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준다. 실례로 “요원의 불길 같은 민족의 함성 십만 군중, 일(日)의 비인도성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1959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일본 정부의 친공 정책을 분쇄하고 재일교포 송북을 반대하는 ‘국민총궐기대회’가 1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국내 각 정당 대표와 정부 관리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 등 근 10만 명이 참집한 가운데 열려 ‘일본’ 측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규탄의 아우성을 퍼부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1,029만 명 교포 송북 반대 데모”라는 제목의 1959년 3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재일교포북송반대」 「데모」는 30일에도 계속 전개되어 지금까지 참가한 연인원이 1,029만 5,499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삭풍 속에 데모 교포 송북 반대”라는 제목의 1959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삭풍 속에 또 다시 재일교포 송북 반대 「데모」가 전개되어 22일 하루 동안에만 「데모」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에서 14만 백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2일 동 「데모」가 시작된 이후 22일까지 전국에서 2,049만 일천여 명이 데모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재일동포가 끝내 북한으로 떠나자 당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여러 건의 기사를 통해 북으로 떠난 이들 재일동포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제일차 북송선 출항 14일 하오 2시 청진으로 향발 조국 등진 9백 75명 험악한 분위기 속에 상오 9시부터 승선”이라는 제목의 1959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조국 등진 9백 75명”을 큰 제목으로 강조하고 그 옆에 이들이 “자유의사”로 북송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국을 등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사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14일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인간 대이동의 날」은 오고야 말았다. 자유대한의 동포 2천만과 재일한국 수십만의 「만류」도 「결사적 반대투쟁」도 일본의 복송 흥계를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일찌기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유진영으로부터 「철의 장막」으로 가기를 원하는 한교 9백 75명을 실은 소련 선박 2척은 현지 시간 2시와 2시 반 2차로 나뉘어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에 올랐다. … 이미 동경에 와 있는 국적위(國赤委) 대표 「앙드레·듀랑」 씨는 모든 복송 지원자들이 「자유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말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명했으며 일적(日赤)은 9백 75명의 복송 지원자들이 모든 복송 지원에 「자유의사임을 재확인」하였고 번역자(翻意者)는 하나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59/12/14).

또한 “차거운 날씨에 차거운 지옥으로 왜 갔나? 복송교포”라는 제목의 1959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도 북한으로 간 “약 일천 명의 재일한국인”을 “그들”로 타자(Other)화하며 “그들”이 북한으로 간 이유를 “빈곤과 비굴로부터의 도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약 일천 명의 재일한국인은 14일 철의 장막 후방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민주 일본을 떠났다. 빈곤에 싸인 북한의 미지수를 찾아 「아시아」 최고의 번영 국가로 알려진 일본을 떠나려고 대기 중인 사람은 아직도 수천 명이 더 있다. 그들의 송환 동기는 회향병일지 모른다. 그들은 일본에서나 또는 남한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38선 이북에는 사실상 그들을 기다리는 친척도 집도 없다. 공산당국이 약속한 일터와 주택만이 그들을 기다리는 전부이다. … 만일 그들이 일반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결코 일본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태는 그들에게 일본서의 이국을 강요하였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비굴감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한은 취업의 길이 막연한 것으로 비치인다. 사실상 남한은 지금 그 자신의 노동력 과잉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지지한 진전은 언제 남한으로의 송환의 길이 열리게 될는지 막막한 것으로 그들은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나라라고는 없는 처지에

서 그들의 선택은 오로지 공산 북한 이외는 없는 것이다(조선일보, 1959/12/16).

“마술에 걸려 생지옥으로 굶은비 맞으며 기어코 떠나다 명부 교환으로 끝난 ‘자유의 매각’”이라는 제목의 1959년 12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도 위의 『조선일보』 기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떠나는 975명의 재일교포를 “눈이 어두운 재일교포”, “자유를 버린 사람들”로 칭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의 하늘 아래서 암흑의 공산 장막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975명의 눈이 어두운 재일교포는 14일 하오 2시 30분 바로 이 시각에도 바다 건너 고국에 선 수백만의 동포가 그토록 피나게 송북 강행 반대를 외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마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소련 선원이 움직이는 2척의 선박에 몸을 실고 북으로 떠나고야 말았다. ... ○ 이어 이들 송북 교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일본 땅에서 소련 배로 몸을 옮기고 자유로왔던 몸은 구속의 몸으로 「굴레」를 쓰고 말았다. ○ 12시 40분 경 2척의 소련 배와 육지 사이에 건너졌던 「타라표」이 오르고 葛西 「일적」 부사장과 이(李) 북한 괴뢰대표 단장 사이에 승선명부 서명이 교환되고 「자유의 매각」은 거래를 끝마쳤다. ... ○ 2시 30분 「자유에의 고별」을 울리는 소련 배의 기저은 울리고 자유를 버린 이들 975명의 교포를 실은 운명의 배는 인류 자유사에 일대 오점을 남기며 청진을 향하여 북으로 떠나고야 말았다 기어코 가고야만 것이다(동아일보, 1959/12/16).

또한 1959년을 마감하며 한해를 돌아보는 “1959년의 낙진”이라는 제목의 1959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 가십 기사는 북한으로 떠나는 재일동포를 “제 발로 생지옥 길을 떠난 어리석은 교포들”이라 칭하며 “갈 사람은 가고 남아 있을 사람은 남아 있어라”는 의미로 “고우맨 고 이즈맨 이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으로 떠난 재일동포들에 대한 분통함을 표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X일. 일본 정부는 귀머거리. 주일대표부는 병어리. 재일교포는 장님.

송복선은 약삭같이 「니이가다」를 떠나고야 말았다. 동포들의 절규도 못들은 양, 끝내 제 발로 생지옥 길을 떠난 어리석은 교포들 … 분통이 터져서 엉터리 영어 한마디 「고우맨 고 이즈맨 이즈」!(동아일보, 1959/12/31)

이처럼 북한으로 떠난 재일동포를 “제 발로 생지옥 길을 떠난 어리석은 교포들,” “눈이 어두운” “자유를 버린” “조국을 등진” “그들”로 보는 인식과 더불어 재일동포 북송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조총련과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인식이 이 시기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재일한교 북송선의 출항과 우리의 금후 대처책”이라는 제목의 1959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조총련을 “괴뢰 집단의 압잡이”로 칭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재일한교 북송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은 ○언할 바 없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재일한교로서 괴뢰집단의 압잡이가 된 소위 조총련이 한교 북송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제아무리 교포의 축출을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조총련의 주동적 역할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전자(前者) 일적에서 처음으로 북송 희망등록을 개시하였을 때 조총련의 반대 때문에 등록자 수가 약 이백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조총련에 반격을 가하여 이 공산도배들이 일본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만이 재일교포를 모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위신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조선일보, 1959/12/15).

이외에 “조련계서 자금 밀송?”(1960/6/8), “횡설수설”(1960/12/31) 등의 『동아일보』 기사도 조총련을 “괴뢰의 압재비” 또는 “괴뢰의 괴뢰”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1960년 12월 31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가십 난에 실린 기사는 1960년 12월 19일 서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부 38명 가운데 남한 잔류를 희망 한 송복 재일교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직 한 가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재일교포로서 송북된 그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다는 그것뿐이다. 그들은 다섯 식구 한 가족이 일주일분 식량으로 겨우 잡곡과 얼러 한말 남짓하게 타가지고 연명해 간다고 한다. … 아무리 “왜 왔던고?”라고 회한의 눈물까지 흘린다지만 「자작지열(自作之孽)」이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할 여지가 없이 됐다. 이렇듯 제 궤에 넘어가서 지옥을 낙토로 오인하고 간 동포가 이미 오만 명, 아직도 송북 연장 기간 일년을 앞두고 오만 명이 더 될지 십만 명이 넘어 될지 모르는 판이다. 「조총련」이라 이름 하는 “괴뢰의 괴뢰”들이 앞장서서 좋은 옷을 입혀줍네 배부르게 밥을 먹여줍네 훌륭한 집을 줍네 그리고 편안하게 일자리를 줍네 하는 간악한 속임수에 빠져 “너도 나도”하고 보따리를 꾸릴 한교들이 또 부지기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그렇듯 사술(邪術)에 넘어가서 조국인 대한민국을 배반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등지게 될 그 허물이 뉘에 있느냐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1960/12/30).

이러한 기사들은 재일동포 북한 송환을 계기로 조총련계 재일동포, 당시 신문에서 자주 쓰이던 표현으로는 “조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우리 정부와 사회는 기본적으로 재일동포에 대해 그들의 “법적지위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까닭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이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한국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재외국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조총련계이든 민단계이든 모든 재일동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의 주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일동포 북한 송환을 계기로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괴뢰집단의 압잡이가 된 소위 조총련”과 이들의 “유혹”과 “사술에 넘어가서 조국인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자유를 버린”, “한심한”, “어리석은”, “눈이 어두운” 교포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이들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포함하던 것에서 점차 이들을 “그들”로 “타자(Other)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위에서 인용한 “고우맨 고 이즈맨 이즈”의 표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해 “국민”의 범주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국민”의

범주에서 떠날 사람은 떠나라는 인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특히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포섭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초기만 하더라도 “국민”의 경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국적, 거주지,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동포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신문 기사는 물론 대통령 담화, 정부 공식 행사 등에서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지칭할 때 “국내국외 삼천만 동포”와 같이 남과 북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를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포괄적 인식은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한국전쟁, 냉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일본의 주권 회복과 1959년의 재일동포 복송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재중동포와 재소동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의 사할린 점령(1945)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사할린 소련 귀속(195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한국전쟁과 냉전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중국, 소련과 교류가 완전히 단절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되었다. 반면 재일동포의 경우는 이들 공산권 거주 동포들과 달리 재외국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이들 재일동포 가운데 조총련을 지지하는 소위 “조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인식은 점차 배타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재일동포 복송이 한 일 양국과 북한 사이에 현안으로 등장한 이후 “조국을 배반”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눈이 어두운”, “조련계” 재일동포를 “우리 국민”이 아닌 “그들”로 타자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경계와 관련하여 재중동포와 재소동포를 “망각”하고 “조련계” 재일동포를 타자화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 시기 한국 민족주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민족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 가운데 혈통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기욱(Shin 2006) 등의 연구는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경계 설정이 “거주지나 이념에 상관없이” 혈통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분석한 본 논문의 분석은 “한국인”의 경계 설정이, 즉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계 설정이 단순히 혈통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의 분석은 한국 전쟁과 냉전을 거치며 재중동포, 재소동포, “조련계” 재일동포 등이 여타 “한국인”들과 “동일한 혈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거주지, 이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서 서서히 “망각”되고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배타적 단일 민족주의, 특히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고려인, 프로축구 정대세 선수와 같은 조선적(朝鮮籍) 출신의 재일동포는 물론 북반에서 온 새터민 등 여타 “한국인”들과 “동일한 혈통”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마저 “우리”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배타적 단일민족주의의 기원이 전적으로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냉전에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엄밀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투고일자: 2015-06-03 심사일자: 2015-06-09 게재확정: 2015-06-15

참고문헌

-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pp. 15-38.

- _____. 2011.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pp. 11-31.
- 권영설. 1997. 「헌법의 國民條項과 國籍法」. 『고시계』 제42권 제7호, pp. 88-100.
- 김경득. 2003. 「재일조선인이 본 ‘재외동포법’과 향후의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5권, pp. 131-162.
- 김정은·윤노아. 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pp. 123-140.
- 김도경·정명주·차창훈·지종화. 2009. 「다문화주의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9권 제1호, pp. 183-214.
- 김동춘. 2009.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창작과 비평』 제106호, pp. 30-47.
- 김수자. 2009.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pp. 114-144.
- 김용찬. 2000.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사회연구』 제5권, pp. 62-76.
- 김범수. 2009. 「‘국민’의 경계 설정: 전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pp. 177-202.
- 김봉섭. 2009. 「한국 재외동포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민족연구』 제37호, pp. 6-71.
- 김현선. 2006. 「국민, 半국민, 非국민: 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제12호, pp. 77-106.
- 노영돈. 1997.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pp. 49-64.
- 박경숙. 2009. 「식민지시기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2호, pp. 29-58.
- 박선웅. 2013. 「초중등학생의 ‘한국인’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이론』 제43권, pp. 161-1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a.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2752#0000>(검색일: 2015년 2월 20일).
- _____. 2015b. 「국적법 [시행 1948. 12. 20.]」.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D%97%8C%EB%B2%95#iBgcolor10>(검색일: 2015년 2월 20일).
- _____. 2015c. 「재외국민등록법[시행 1949. 11. 24.]」.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C%9E%AC%EC%99%B8%EA%B5%AD%EB%AF%BC#iBgcolor6>(검색일: 2015년 2월 24일).
- 윤인진. 2005.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비교」. 『한국사회』 제6권 제1호, pp. 33-71.
- _____. 2013.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 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제54권, pp. 4-22.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42집 2호, pp. 72-103.
- 이병훈. 2004. 「한국인은 누구인가?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pp. 153-177.

- 이장희. 1998.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이장희 편,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중훈. 2003. 「재외동포법의 개정 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5권. pp. 109-129.
- 이진영. 2002.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4호. pp. 133-162.
- 이철우. 2002.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2권. pp. 253-278.
- 전재호. 2008.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22호. pp. 99-134.
- 정기선. 2004.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불평등 지가, 노동지향, 가족가치: 국제사회조사(ISSP)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정기선·이선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 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 45-72.
- 정기선·이선미·김석호·이상림·박성일.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서울: IOM 이민정책연구원.
- 정인섭. 1996.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4.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 검토」. 『공익과 인권』 제1권 제1호. pp. 13-29.
- 채경석. 2006.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제9권 제1호. pp. 171-193.
- 최중호. 2006.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 『민족연구』 제27권. pp. 167-184.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pp. 147-173.
- 통계청. 2015a. 「인구추세 1910-1961」.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TabId=M_01_03_01#SubCont(검색일: 2015년 1월 17일)
- _____. 2015b. 「인구동태 1930-1948」.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parmTabId=M_01_03_01#SubCont(검색일: 2015년 1월 17일)
- 外務省. 1961. 『数字からみた在日朝鮮人』. 東京: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 大沼保昭. 1978a. 「資料と解説: 出入國管理法制の成立過程 4」. 『法律時報』 50卷 7号. pp. 113-117.
- _____. 1978b. 「資料と解説: 出入國管理法制の成立過程 7」. 『法律時報』 50卷 10号. pp. 137-143.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Habermas, Jürgen. 2000. *The European Nation-State: On the Past and Future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 Inclusion of the Other. Cambridge, MA: MIT Press, pp. 105-127.

Kim, Bumsoo. 2008. “Bringing Class Back In: The Changing Basis of Inequality and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Ethnic and Racial Studies* 31(5): 871-898.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Yoon, In-Jin. 2012. “Migration and the Korean Diaspora: A Comparative Description of Five Cas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3): 413-435.

Whether are Overseas Koreans Really “Korean”?:
An Analysis of *Chosunilbo*’s and *Dongailbo*’s Articl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1950s

Bumsoo Kim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social boundaries of “Koreans” with a question whether South Korean society regarded overseas Koreans residing in Communist China,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and Japan as a member of a (South Korean) political community or not. Specifically, by analyzing *Chosunilbo*’s and *Dongailbo*’s articl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ugust 15, 1948) to the 1950s (December 31, 1960), this paper shows that,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China (1949), Korean War (1950-1953), Cold War, an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1959), South Korean society gradually forgot Koreans in Communist China and the USSR, and began to exclude Ch’ongryon-affiliated Koreans in Japan as Others. This suggests that not only bloodline but also various factors such as nationality, residence, and ideology, all combined together, play an important role in defining the social boundaries of “Koreans.”

Keywords: Nationals, Boundary, Inclusion, Exclusion, Overseas Koreans